

대전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2가단1353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30.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30,000,000원에 관한 2019. 10. 15.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강길연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B(이하 '채납자'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 A은 소외 B의 자입니다.

(가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2. 소외 B의 채납내역 및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성립에 대하여

가. 국세부과 경위 및 채납내역

소외 B는 2018. 09. 18. 대전광역시 동구 C 토지를 양도한 후 신고하였으나 신고 오류에 따른 경정고지로 소재기일 현재 230,060,730원 국세가 채납되어 있습니다. (<표1> 참조)

<표 1. 소외 B 채납내역 >

(단위: 원)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 립 일	납부기한	고지금액	채납액	비고
양도소득세	2018	2018.09.30.	2020.03.15.	229,331,920	230,060,730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의 조세채권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자산의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8. 9. 30.일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참조)하고, 소외 B가 피고에게 현금 30,000,000원 증여한 시점은 2019. 10. 15.일이기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당연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가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3.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소외 B는 이 사건 부동산인 대전 동구 C 토지를 850,000,000원에 매매하면서 2018. 7. 5. 계약후 2018. 9. 18.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매매대금은 소외B 계좌인 D조합(계좌번호 1 생략) 통장으로 모두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납추적조사 과정에서 실시한 금융조회 결과 소외 B는 양도대금 수령이후 거의 대부분 수표 발행하여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이 중에서 소외 B는 대전대흥동우체국에서 발행한 수표를 E조합에 제시후 2019. 10. 15.일 피고에게 현금 30,000,000원 이체(증여)한 것이 확인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됩니다.

(궤 제3호증 금융거래 이체내역 및 궤<2> 참조)

<표2> 사해행위 당시 소외 B 채무초과 여부

구분	종류	내역	가액(원)	비고
적극재산	부동산 (토지)	충북 옥천군 F	9,774,234	기준시가
	금융 자산	G조합 등	2,783,994	예금
소계			12,558,228	
소극재산	조세	양도소득세	230,060,730	
	채무			
	지방세	대전광역시 중구	24,654,120	갑 제4호증 지방세납세증명서
소계			254,714,850	
채무초과			△242,156,622	

4. 사해행위를 안 날

위와 같이 소외 B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채납자가 발행한 수표를 2022. 8. 5.일 이후 조회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5. 가액배상 산정근거

채납자 B가 피고에게 증여한 금액은 2019. 10. 15.일 30,000,000원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 230,060,73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증여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증여받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증여재산이 쉽게 사용·소비되는 현금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입니다.

6. 결 론

이러한 사실로 보아 소외 B는 원고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이 사

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요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